봉사하는 재단
연구하는 재단
NEW KOSAF

"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"
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안내 핵심설명서
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?

○ 대출실행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발생소득이 상환기준소득('17년 총급여 기준 1,856만 원)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의무가 유예되는 대출

✔ 상환유예 중에도 이자는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상환관리 필요!

[장학재단 홈페이지 ▸ 학자금대출 ▸ 학자금뱅킹 ▸ 학자금대출상환 ▸ 대출내역]에서 대출현황 및 유예이자 확인가능
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법

○ **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**은 국세청을 통해 상환, **본인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**은 재단을 통해 상환

○ **[국세청]** 연간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·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**의무적 상환**

[국세청 취업후학자금상환 홈페이지 ▸ 대출자 ▸ 대출및상환내역/원천공제 미리납부신청/고지·체납분 납부]

소득종류	상환방식
근로소득, 연말정산 사업소득, 연금소득	고용주에 의한 원천공제 방법과 채무자가 미리 1년분을 직접 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
퇴직소득	고용주에 의한 원천공제
종합소득, 양도소득, 상속 · 증여소득	국세청에서 발부된 고지서로 납부

○ **[재단]**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대출원리금 **자발적 상환**

1회성 중도 상환	[장학재단 홈페이지 ▸ 학자금대출 ▸ 학자금뱅킹 ▸ 학자금대출상환 ▸ 중도상환]에서 상환방식(일부상환, 전액상환) 선택하고, (원금/원리금 상환) 선택 후 상환하고자하는 금액 입력 → 등록된 출금계좌 (홈페이지등록필요) 또는 가상계좌(당일 19시까지만 입금 가능, 상환처리까지 1일 소요) 납부
매월 자동 이체	**(본인명의 계좌)** [장학재단 홈페이지 ▸ 학자금대출 ▸ 학자금뱅킹 ▸ 학자금대출상환 ▸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이체약정등록] 에서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, 이체금액,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신청
	(타인명의계좌) [장학재단 홈페이지 ▸ 고객센터 ▸ 자료실 ▸ 든든이체약정 등록 및 변경신청서(제3자용)] 게시글에 포함된 첨부파일 모두를 작성한 후 채무자 본인 및 이체신청자의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과 함께 팩스(1800-3905) 또는 우편 송부
※자동출금 시 통장의 잔액이 고객님이 설정한 이체금액보다 적을 경우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.	

주요 신고의무

● 채무자신고 (정기, 상시)

- **정기신고:** 매년 12월 한 달동안 본인(배우자 포함)의 주소, 직장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
  단, 군복무 · 해외여행 · 질병으로 정기신고가 불가한 경우 상시로 신고 가능
- **상시신고:** 소득이 발생한 경우 즉시 소득발생사실에 대하여 신고

[장학재단 홈페이지 ▸ 학자금대출 ▸ 학자금뱅킹 ▸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▸ 채무자신고]

● 해외이주

- 해외이주 예정인 경우 **출국 3개월 전**까지 이주사실 및 계획을 신고해야 하고, **출국 1개월 전**까지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또는 분할상환약정

[장학재단 홈페이지 ▸ 학자금대출 ▸ 학자금뱅킹 ▸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▸ 해외이주/유학신고 ▸ 신고하기]

● 유학신고

- 6개월 이상 해외유학 예정인 경우 **출국 40일 전**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상환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담보제공의무 발생

[장학재단 홈페이지 ▸ 학자금대출 ▸ 학자금뱅킹 ▸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▸ 해외이주/유학신고 ▸ 신고하기]

- 유학연장신고: 해외이주/유학신고변경신청서 제출 (icl@kosaf.go.kr)

[장학재단 홈페이지 ▸ 고객센터 ▸ 먼저확인해요 ▸ 자료실 ▸ 해외이주 유학신고 관련 서류양식]

- 귀국신고: 출입국증명서 업로드

[장학재단홈페이지 ▸ 학자금대출 ▸ 학자금뱅킹 ▸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▸ 채무자신고]

✔ 주요 신고의무 미이행 시,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.

장기미상환자

-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(자발적 상환 포함)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 자

[장학재단 홈페이지 ▸ 학자금대출 ▸ 학자금뱅킹 ▸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▸ 장기미상환자 ▸ 장기미상환자 현황]

- 국세청에서 소득 · 재산조사(배우자 포함) 후 조사결과에 따른 의무상환액 부과 및 미납에 따른 체납처분 가능
- 자발적으로 대출원리금 5% 이상을 상환하거나, 졸업일자 및 현재 대학교 재학 중(대학원,해외대학 제외) 또는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소명할 경우 재산조사 중지 가능

[장학재단 홈페이지 ▸ 학자금대출 ▸ 학자금뱅킹 ▸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▸ 장기미상환자 ▸ 장기미상환자 소명신청]

[국세청 취업후학자금상환 홈페이지 ▸ 대출자 ▸ 장기미상환자]

문의처

(한국장학재단) 대출현황 및 자발적 상환, 해외이주 · 유학 관련
홈페이지 www.kosaf.go.kr ☎ 1599-2000(내선 4번)

(국 세 청) 의무상환 및 장기미상환자 관련
홈페이지 www.icl.go.kr ☎ 126(내선1-4번)

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

발행월: 2017. 10.